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6. 24(수), 14:00 ~

■ 장 소: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当 か					
【심의사항】					
1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우회도로 개설(* <u>설명</u>)	공개			
2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물양장 조성	공개			
3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주변 썬비치 해금강 리조트 조성(*설명)	공개			
4	「담양 관방제림」내 마을회관 신축	공개			
5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정비	공개			
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내 교량 설치	공개			
7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주변 문화재정보센터 신축	공개			
8	「제주 수산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1)	공개			
9	「제주 수산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2)	공개			
10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11	「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2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죽방렴 발통부 추가 설치	공개			
13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모노레일 설치	공개			
【보고사항】					
14	천연기념물 측백나무 숲 보존·관리방안 연구계획 보고	공개			
1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06-01

1.「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우회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안전총괄과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11. 6.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산방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689번지 등 일원

ㅇ 사업내용 :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

구분	개요	연장(m)	폭(m)	평균 성토고(m)	주요 구조물
1안	기존도로와 45m 이격, 토공 통과	891	11.5 (2차로)	13.7	-
2안	기존도로와 46m 이격, 일부 터널 통과	1,012	11.5 (2차로)	9.5	45.0m (비개착터널)
3안	기존도로 활용노선, 피암터널 통과	726	8.0 (2차로)	_	540.0m (피암터널)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30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기존건물 재·개축 허용) 및 제3구역(제주 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구역은 문화재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우회도로 건설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4.16.)

- 신청 사업안은 도로건설에 따른 대규모의 인공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조성으로 인해 국가지정명승인 제주 서귀포 산방산의 경관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지질 지형 가치가 중요한 용머리해안 상부의 원지형을 훼손하는 계획안임.
- ㅇ 낙석 위험이 있는 기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4.16.)

- 현재 우회도로가 없지 않으므로 이 도로는 폐쇄하는 것이 최선이나, 주민의 교통편의는 적지 않은 피해가 추정되므로 도로의 안전성 확보는 필요함.
- 우회도로 안은 낙석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되리라 생각되나, 국가지정 명승으로서 산방산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용머리화산체의 일부도 훼손시키게 되어 있어 크게 우려되는 안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보류

2.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물양장 조성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물양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주변 물양장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ㅇ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 물양장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ㅇ 사업목적 : 물양장 조성을 하기 위함
 - ㅇ 사업내용

<보완 전>

- 부지면적 27.914m², 사용대지 면적 6.700m²
- 물양장, 세륜장, 방진벽, 세척조, 가설건축물 설치
- 물양장 시설 방진천막 지붕 설치 2,940㎡, 방진벽 340m×5m 세륜장 5.15m×14.30m×1m, 침전조 12m×4.8m×3.0m, 컨테이너사무소 21 ㎡, 모래 세척조 450㎡, 모래 야적장 6,700㎡, 수목식재 1식
- 물양장 시설 지붕 오픈형

<보완 후>

- 부지면적 27.914m², 사용대지 면적 3.311m²
- 물양장, 세륜장, 방진벽, 세척조, 가설건축물 설치
- 물양장 시설 방진천막 지붕 설치 2,940㎡, 방진벽 340m×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6. 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m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일부 문화재 구역 포함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명지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모래 공급을 위해 한시적(5년간) 운영을 하고자 물양장을 조성하는 사업임.
- 물양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신축지는 허용기준 제4구역으로 10층이하(최고 높이 32m) 가능한 지역이며, 운반선 계류장은 별도의 접안시설이 필요없이 선박에서 모래를 임시하역 후 퇴선.
- 물양장은 가설건축물(일반철골조)로 지붕설치하는 구조로 모래 비산으로 인한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륜장과 세척조는 관련법 허가기준을 준수하였으나, 세륜장과 세척조, 침전조는 허가기준 보다 더 강화하여 설치 하였으며, 신청서에 제시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준수하면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18.)

본건은 신청지역 자체가 모래 야적장으로 물양장, 세륜장, 방진벽, 세척조 등본 건의 허가 없이는 비산먼지나 모래 및 환경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조건부허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6.18.)

- 본 사업은 건설사업에 필요한 바닷모래를 선박으로 운반해 와서 세척하고 야적해 두기 위한 물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번 불허된 바 있으며, 침전조설치, 비산먼지 대책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건임
- 신청서에 제시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준수한다면 철새의 도래 서식에 큰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조건부 가결

3.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주변 썬비치 해금강 리조트 조성

가. 제안사항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주변 썬비치 해금강 리조트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주변 썬비치 해금강 리조트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 ㅇ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안 일원
 - ㅇ 지정일 : 1970. 10. 30.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주변 썬비치 해금강 리조트 조성
 - ㅇ 사업위치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78-1번지 일원
 - ㅇ 사업목적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썬비치
 - 해금강 리조트 조성
 -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7,897.26m², 건축연면적 70,527m², 층수 3층~10층, 7동
 - 시설배치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m')	규 모				
구 분		건축면적(m²)	덕(m²) 연면적(m²)	층수	동수	비고
총 계	39,879	7,897.26	71,496.6	지하3층/지상10층	7동	
관관휴양시설	25,113	7,897.26	71,496.6	지하3층/지상10층	6동	
숙박시설1	17,610	5,707	55,085	지하3층/지상10층	4동	콘도 A(10층), B(5층), C(3층), D동(5층
숙박시설2	3,939	1,256	13,640	지하3층/지상7층	1동	콘도 F동(7층)
숙박시설3	1,823	488	1,802	지하2층/지상6층	1동	콘도 E동(6층)
상업시설용지	1,741	446.26	969.6	1층	1동	기존 유람선매표소
공공시설 용지	2,793	81		=		일반, 보행자전용도로
녹 지	11,973		i	-		-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12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5구역(평스라브 4층 이하, 최고높이 14.0m이하, 경사지붕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라. 검토의견(*****)

- 현재 해금강 호텔(3층)부지를 '거제 썬비치 해금강 리조트'로 변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신청 사업구역은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14.0m이하(경사지붕 18.0m)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나, "명승 제2호 해금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으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로 되어 있어 1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함
- 시설계획(안)의 콘도A는 10층의 건축규모로 건축물 높이 34m(해발고 76m)로 주변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4.)

-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거제연안 아비도래지의 허용기준 5구역과 명승 거제 해금강의 허용기준 3구역에 최고 10층 높이의 리조트개발 사업임
- 아비류는 주로 동해와 남해의 연안에서 멸치떼를 따라다니며 이동 서식하는 겨울철새로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아비류는 회색머리아비와 큰회색머리아 비가 대부분임
- 아비류가 주로 해상생활을 하며 해상으로 이동하는 생태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서식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은 이비류의 서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계획서와 같이 개발로 인한 이색적인 경관이 연출된다면 아비류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축양식,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배치, 경관색채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근의 명승 해금강에 대한 조망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

 신청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지구(5구역: 4층 이하)와 인접한 3구역(10층 이하)과의 건물높이 규제의 형평성 문제는 명승 해금강의 조망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무시해도 무방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4.)

- 대상지는 아비도래지 제5구역으로 낙후된 해금강 주변의 관광시설의 선진화 및 확충을 위해 콘도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숙박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이 7개동으로 지나치게 크며, 또한 건축물이 10층에 달하는 등 사업규모가 입지조건 및 주변 경관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됨
- 세부적으로는, 우제봉으로부터 내려오는 능선 사면은 경관적으로 두드러지는 곳으로 여기에 입지한 콘도A동은 10층으로 인접 접근로로부터 해금강으로의 조망을 차단하고 있으며, 다른 콘도인 D, F, C동 역시 경관 배리어를 형성하여 해금강으로부터 경관도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광지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숙박시설을 설치하거나 조경을 하여 관광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음
- 신청사업이 시행된다면 명승 해금강의 경관을 해치고 주변 지형과 조화롭지 못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인접지에 무분별한 개발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명승 해금강의 관광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해금강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보류

4. 「담양 관방제림」내 마을회관 신축

가. 제안사항

「담양 관방제림」 내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담양 관방제림」내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연접 필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객사리 일원
 - ㅇ 지 정 일 : 1991.11.27.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마을회관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 **-***
 - ㅇ 사업내용 : 기존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
 - 기존 마을회관 철거(남산리 50-2번지/1995년 건립)
 - ·1동, 1층, 조립식 판넬구조, 대지면적 89.26㎡, 건축면적/연면적 : 52.38㎡/52.38㎡
 - 마을회관 신축(남산리 49-1번지)
 - ·1동, 1층, 최고높이 5.0m, 경량철골구조, 대지면적 413㎡, 건축면적/연면적 : 82.26㎡/82.26㎡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9.2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마을회관 신축 사업구역은 담양 관방제림 문화재구역 내로「담양의 관방제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2006년 수립)」에 따라 정비할 목적으로 담양군에서 2011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임
- 현재 관방제림 보호 및 주변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마을회관 신축 예정지를 포함한 지역도 향후 숲 조성 등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17.)

- 기존 마을회관은 노후되어 철거해야하며, 마을회관을 관방제림 문화재구역에 신축하는 것은 관방제림의 역사성이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관방제림 문화재구역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는 주된 원인은 저렴한 토지가 격이며 예산을 더 확보하여 구역 밖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대안 으로 건축물을 문화재구역 내 전통적인 양식으로 짓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그 효과를 달성하기 불확실하며, 관방제림의 역사성, 경관성 측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명확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17.)

- 담양읍 남산리 **-*번지 등 관방제림내(천연기념물 제366호) 기존 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 등 현상변경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을회관은 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어찌 보면 관방제림과 같은 일종의 원림(園林) 시설은 그리 불편하거나 비친화적 시설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단지 기존 대지면적의 약 4배, 건축면적의 약 1.6배의 시설 규모를 보이는 시설로 전환된다면 늘어난 면적에 비례하여 경관훼손에 따른 위화감과 제림의 상대적 왜소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이와 같이 건물 증축으로 인한 경관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저감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상중인 마을회관 건축물의 구조를 비롯하여 높이 등을 관방제림이라는 장소성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한편 설계 시 생태건축 또는 친환경소재의 도입 등을 통한 설계기법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더불어 건물 외곽의 완충녹지나 차폐식재대의 조성 등을 통해 신규 마을회관 조성에 따른 시각적 교란과 강도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출의견 / 2015.5.20.)

 신청지는 문화재구역 내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지이나, 동 시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개축을 위한 것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함

바. 의결사항: 부결

5.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정비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초「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준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이나, 2015년도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4.22) 시 '살레덕항 준설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 사유로 부결됨
- ㅇ 금회 신청인이 살레덕항 정비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 ㅇ 지 정 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마라도 살레덕항 정비
 -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공유수면)
 - ㅇ 사업내용

1차 신청('15.4월/부결)	금회 신청
ㅇ 마라도 살레덕항 준설	○ 물양장 전면해역 거석제거(1,200m²) 후 방
- 계획수심 DL.(-) 3.5m,	파제 서편으로 재배치
- 준설면적 3,600 m²	○ T.T.P 재배치(총 100개)
ㅇ 박지준설(여굴 포함) 5,893㎡,	- 물양장 전면해역(10개)
여쇄 1,319㎡, 오탁방지망 및	- 방파제 제두부(90개)
등부표 설치 등	※ 파손 등으로 상태가 불량하여 재
	배치가 불가능한 T.T.P는 수거 후 내륙
	으로 반출하여 처리 예정
	ㅇ 물양장 마루높이 증고
	- 길이 40~45m, 포장두께 30cm
	ㅇ 물양장 주변 진입로 옹벽 보강
	- 길이 27m, 보강두께 30c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10.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마라도 내 살레덕항의 여객선 접안 및 통항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물양장 주변 해역 거석 제거 및 T.T.P 재배치 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 당초 신청('15.4월)은 여쇄(해저 암 파쇄) 및 준설을 계획하였으나, 금번 신청은 물양장 전면해역에 거석 제거 및 이탈된 T.T.P를 재배치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여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현지조사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6.18.)

- 정점 4, 5, 7, 8 지점에서 선박하부에 접촉(충돌) 가능한 거석제거는 그 필 요성이 인정됨. 단 포크레인 등으로 바닥을 긁는 형태의 준설방법 보다는 선 별된 암초만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여 들어내는 형식의 작업을 제안함
- 제거 암초(파손된 T.T.P 포함) 선별작업은 해양생태 전문가 및 문화재청 담당자의 현장입회 하에 수중비디오 촬영과 생물상 영상 확인작업을 수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1~2일 소요 예상)

○ 중장비 동원 현장제거 작업 시 선별작업에 참여한 수중다이버 포함한 현장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사전 표시된 암초들만 제거하기 위함

(*** 해양저서생태학 성균관대학교 교수 서면검토 의견 / 2015.4.14.)

- ㅇ 현장의 생물상조사는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판단됨
- 제출된 보고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지역 내에는 보호대상종들이 다수 포함되거나, 일반적 해양저서생물상이 제주남부해역 평균적 기준으로 볼 때 우수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 총 82종의 저서무척추동물 중에서 보존대상에서 떨어지는 연체동물이 86%, 해면동물이 11.5%이며, 연산호를 포함하는 자포동물이 1.4%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그러나 깊은 수심대 정점(6, 9, 12)에서는 연산호의 종다양성은 범섬, 문섬 수준이나, 전체 생물량은 여전히 낮음
- 계획평면도에는 준설 예정지역이 표시되었으나, 조사보고서 상의 조사정점
 12개의 위치에는 준설지역이 표기되지 않아서 상호비교가 어려움
- 만약 수심대가 10m 이하인 정점 6, 9, 12 지점이 준설지역이 아니고, 준설 지역이 정점 4, 5, 7, 8 지점에 한정된다면 본 준설계획은 오탁방지막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살레덕항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 마라도 살레덕항 해양생태 조사용역 결과

○ 조사기관: *****

○ 조사기간 : 2015.3.9~4.7(30일간)

ㅇ 조사지역 : 마라도 살레덕항 주변

0 용역내용

- 공사 범위 내·외 서식하는 해양 동·식물의 출현종 및 생물량 분석
- 출현 해양생물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공사시행에 따른 서식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방지 대책 제시
- ㅇ 세부조사 내용
 - 총 조사정점 : 12개소
 - 살레덕항 남측 준설공사 예정수역 해양생물 조사 : 9개 정점
 - 살레덕항 북측 해양생물 조사 : 3개 정점

- 조사항목 : 해조류 각 조사정점별 0.5m²(50cm×50cm×2개소), 저서무척추동물 : 각 조사정점별 0.5m²(50cm×50cm×2개소),

ㅇ 조사결과

- 조사해역은 2~17m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으며, 해저면은 기반암으로 조성된 암반 위에 크고 작은 암반들이 산재해 있는 양상을 나타냄
- 살레덕항 주변해역에서 조사된 해조류는 총 38종이었고 대부분의 정점에서 해조류 군락이 잘 발달해 있었고,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는 감태와 모자반류 군락의 혼합 해중림이 발달해 있는 반면, 수심이 다소 낮은 해역에는 큰 열매모자반(Sargassum macrocarpum)을 비롯한 8종의 모자반류와 다양한 단·다년생 해조류로 이루어진 해중림이 발달해 있었음
- 저서무척추동물은 총 82종이 출현하였으며, 특히 수심이 깊은 외해역 정점 6, 9, 12에서 감태군락과 함께 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gigantea), 가시수지맨드라미(D. spinulosa), 자색수지맨드라미(D. putteri), 분홍바다 맨드라미(Alcyonium gracillimum) 등 비교적 다양한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고 있었음

사. 의결사항: 조건부 가결

6.「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내 교량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내 교량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내 교량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015년도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검토 안건으로 논의 시('15.3.25)
 '구체적인 교량설치 계획안 제출시 심의'하기로 보류되었고 이후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 시('15.5.27) '사계리 용머리해안 관람동선과 방문객 안전을 고려한 최적안 재검토' 사유로 부결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번지 외
 - ㅇ 지 정 일 : 2011. 1. 13.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교량 설치
 -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번지 일원
 - 사업목적: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에 낙석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낙석 위험 지역 우회 교량을 설치하여 인명사고 예방 및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
 - ㅇ 사업내용 : 보도교 1개소
 - 규 모 : 길이25m. 폭2.8m. 내경폭2.0m.
 - 상부구조 형식 : Double Plate 거더교
 - 재질 : 외장재 제주 판석
 - 기타 : 난간높이 1.15m , 내진등급 1등급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은 암반의 절리가 발달되어 낙석의 위험이 항시 존 재하며 바다와 바로 인접하여 해수 및 바람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큼
-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최적의 관람 동선 확보를 위해 문화재 경관 과 조화되는 구조물로서의 우회 교량 설치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용머리해안은 수려한 해안절경으로 유명한 문화재인 만큼 시설물 설치시 주변경관과의 조화성이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되지만 이보다 앞서 관광객 의 안전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생각함.

사. 의결사항: 조건부 가결

7.「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주변 문화재정보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주변 문화재정보센터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주변에 문화재정보센터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사항임
- 동 사업은 2014년 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안건이나, 신청인이 신축 규모 및 형태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기존규모 (1967년 축조)	최초 신청 ('14.12월)	금회 변경 신청 ('15. 6월)
연면적29.8m²,	연면적70m²내외	연면적280m²내외,
높이6.0m(1층)	높이8m 내외(2층)	높이11m(3층, 옥상 포함)
육각정(한식목구조)	팔각정(한식목구조)	원형(철근콘크리트조)
(전망대 쉼터)	- 1층 : 문화정보 전시 및 쉼터	- 1층 : 문화재정보 안내실,
	- 2층: 전망대	- 2~3층 : 전시실, 옥상전망대
	ㅇ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ㅇ허가조건 : 수월봉 문화재	
	정보센터 신축 규모를 축소	
	하여 문화재청 설계 검토를	
	받은 후 사업 시행할 것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ㅇ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 등

ㅇ 지정일 : 2009. 12. 11.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 수월봉 문화재정보센터 신축
-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 ***(수월봉 정상)
- ㅇ 사업목적
 - 1967년도에 수월봉 정상의 사유지에 축조된 육각정은 제주도 서부지역 대표 관망 관광명소로 낡고 노후됨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나, 지역의 랜드 마크 기능을 감안하여 대체 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 위치에 접한 공유지에 문화재 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수월봉 인근에 산재한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정보를 전시하고 쉼터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재 정보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 ㅇ 사업내용 : 기존 육각정 철거, 문화재정보센터 신축 및 주변부지 정비
 - 구조 및 형태 : 철근콘크리트조, 원통형(지름 11m, 전면 자열 방화유리)
 - 규모 : 연면적 280㎡ 내외, 높이 11m(옥상 포함), 3층 (1층 문화재정보 안내실, 2~3층 전시실, 옥상 전망대)
- o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내에서 기존 노후된 육각정 전망대를 철거하고 인근 공유지에 탐방객 센터를 신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최초 신청안 관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4.12.17)

- 현재 수월봉에 축조되어 있는 육각정은 노후됨은 물론이고 형태로도 경관 적으로 철거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됨.
- 신설 계획된 구조물은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시설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시설의 형태 등이 전통 양식에 따라 설치된다고 하나, 다만 그 규모가 기존 시설에 비해 다소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봄.

사. 의결사항 : 부결

8.「제주 수산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1)

가. 제안사항

「제주 수산동굴」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수산동굴」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성상읍 수산리 3998 외

ㅇ 지 정 일 : 2006. 2.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 ****-*

ㅇ 사업내용

구분(지번)	***-*번지 임(단독주택)	****-* 임(진입로)
대지면적	615 m²	1,672 m²
건축면적/연면적	82.90 m²/75.55 m²	_
구조/건물높이	철근콘크리트/지상1층(5.4m)	철제트렌치(300*300*6,000L) 자체침투조(3,000*3,000*2,000h): 3개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내 당초 1필지였던 지번을 6필지로 분할 하여 단독 주택 및 진입도로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19.)

○ 단독주택 신축을 신청한 지역은 천연기념물 지정구역과 직접하는 구역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공물의 설치 등이 천연기념물인 용암동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지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함. 따라서 건물의 신축 등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2015.6.19.)

- 수산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형 용암동굴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 대규모 용암동굴들은 형성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굴내부의 용암부 가층(lava lining)들이 양파껍질이 벗겨지듯이 한순간 혹은 순차적으로 벽 면으로부터 떨어져나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용암동굴은 자연 적 붕괴과정을 겪음.
- 수산동굴의 경우 현재 내부에 많은 낙반이 존재하며, 이는 수산동굴 또한 용암동굴의 자연적 붕괴과정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 현상변경 허가신청 지점은 수산동굴 직상부로부터 약60m 이격된 곳으로 지표는 대부분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음.
- > 동굴과 매우 인접한 지점에서의 터파기 등 건축 관련 행위는 진동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붕괴가 진행중인 동굴의 붕괴속도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연붕괴가 진행중인 수산동굴 인근에서의 건축행위는 천연기념물
 로서의 수산동굴의 가치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바. 의결사항: 부결

9.「제주 수산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2)

가. 제안사항

「제주 수산동굴」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수산동굴」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외
 - ㅇ 지 정 일 : 2006. 2. 7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95m²
 - 건축면적/연면적 : 82.90m²/75.55m²
 - 구조/건물높이 : 철근콘크리트/지상1층(5.4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내 당초 1필지였던 지번을 6필지로 분할 하여 동 사업대상 위치에 단독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19.)

 단독주택 신축을 신청한 지역은 천연기념물 지정구역과 직접하는 구역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공물의 설치 등이 천연기념물인 용암동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지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함. 따라서 건물의 신축 등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2015.6.19.)

- 수산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형 용암동굴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 대규모 용암동굴들은 형성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굴내부의 용암부가 층(lava lining)들이 양파껍질이 벗겨지듯이 한순간 혹은 순차적으로 벽면으로 부터 떨어져나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용암동굴은 자연적 붕괴과정을 겪음.
- 수산동굴의 경우 현재 내부에 많은 낙반이 존재하며, 이는 수산동굴 또한 용암동굴의 자연적 붕괴과정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 현상변경 허가신청 지점은 수산동굴 직상부로부터 약60m 이격된 곳으로 지표는 대부분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동굴과 매우 인접한 지점에서의 터파기 등 건축관련 행위는 진동을 유발할수 있으며 이는 자연붕괴가 진행중인 동굴의 붕괴속도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연붕괴가 진행중인 수산동글 인근에서의 건축행위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수산동굴의 가치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허가신청조건하에서 현상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10.「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동홍동 297-1) 2차례 불허 : '13. 9월, '14. 1월.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등
 - ㅇ 지 정 일 : 2008. 8. 8.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건물(다가구주택) 신축
 -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번지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848㎡, 건축면적 153.5㎡, 연면적 225.5㎡, 건물높이 7.2m(지상 2층)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 12. 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기존건물 재·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구역이 문화재구역과 80m 이격하고 있어, 다가구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5.)

- 다가구주택 신축 신청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및 2구역에 걸쳐 있으며, 주된 건축예정지는 1구역에 위치함.
- 1구역에 예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신축은 정방폭포의 명승적 가치를 보존 하기 위하여 억제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부결

11.「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일원
 - ㅇ 지 정 일 : 2011. 6. 30.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서귀포시 하효동 갤러리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번지
 - ㅇ 사업내용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동
 - 규모 : 대지면적 678m², 건축면적 135.36m², 연면적 643.47m², 높이 7.7m
 - (지하1층, 지상2층)
 - 용도 : 전시장, 일반음식점, 사무소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 6. 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 : 기존건물 재·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구역이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5.)

○ 사업 예정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신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곳이나, 허용기준이 설정된 후 주변 상황의 변화가 있고 허용기준이 쇠소깍의 명승적 가치 보존과는 다소 무관하게 넓은 구역까지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가결

12.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죽방렴 발통부 추가 설치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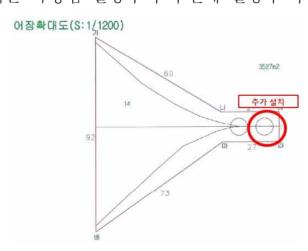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죽방렴 발통부 추가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죽방렴 발통부 추가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1호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 ㅇ 지 정 일 : 2010. 8. 18.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죽방렴 발통부 추가 설치
 -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
 - ㅇ 사업내용 : 기존 죽방렴 발통부의 후면에 발통부 추가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 12. 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구역은 죽방렴 관찰을 위해 설치된 관람대로 인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여 기존 발통부의 후면에 발통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4.30.)

- 신청 사업은 발통부가 2개인 죽방렴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모형으로 탐방객에게 공개하고 있는 죽방렴의 원형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죽방렴은 명승 지정 당시 자연적으로 증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새롭게 죽방렴을 설치하는 것은 별 문제 없는 사안임.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6.10.)

- 관람대 설치와 운영으로 해당 죽방렴 조업의 어려움은 일정 부분 이해가되나, 수백 년간 지족해협에서 이어진 전통 어업 방식인 죽방렴의 원형이추가 발통부 설치에 따라 훼손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람대를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관람대의 운영 주체인 남해군이 해당 죽방렴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어업체험 활동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015.6.2.)

- 현재 남해군 지족해협 소재 죽방렴 23개소를 포함한 죽방렴 전체 26개소 중 발통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곳은 없음
- 주방렴 관람대 해당 어업인의 고충 해결 측면에서 관람방식 변경을 위한 관람대 우회 방법을 앞서 검토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죽방렴 어업 방식을 이해하기에는 현 관람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 하에 현재 관람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바. 의결사항: 부결

13.「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모노레일 설치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세심정에서 상환암 구간에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 본 건은 2015년도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모노레일 용도 및 향후 사용여부 협의 후 재심의'를 사유로 보류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모노레일 용도 및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 ㅇ 지 정 일 : 2009. 12. 9.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속리산 법주사 내 세심정~상환암 모노레일 설치
 -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 일원
 - ㅇ 사업내용
 - 규모 : 세심정~상환암 0.9km 모노레일(1경간 12.6m, W=0.8m, H=0.4~1.2m) 견인차 1대(H=1.16m, W=0.87, L=4.47m
 - 용도 : 상환암 보수공사 시 자재 및 건축폐기물 운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6. 12. 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모노레일 설치가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 2015.5.19.)

- 상환암의 보수공사에 쓰이는 자재 운반을 위한 수단으로는 모노레일의 설치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판단됨. 따라서 모노레일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속리산 천연보호구역의 환경훼손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음 사항의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
 - 이 모노레일은 사업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환암 보수공사의 자재 운반용으로서, 탐방객들의 이용수단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사가 끝난 후 2018년에는 반드시 철거하는 조건을 확약해야 할 것임.
 - 설치 노선은 천연보호구역의 지형 및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노선의 선정과정 및 시공과정은 문화재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 2015.5.19.)

- 본 사업은 세심정으로부터 상환암까지 900m에 이르는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는 것임.
- 사업의 위치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 1-21번지로 문화재 지정구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노레일과 같은 인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는 구역임.
- 하지만 모노레일이 철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상환암 법당과 요사채의 개축 공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는 필요하다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 주변 환경과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모노레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됨.
- 상환암 측에서 개축 공사가 완료되는 2018년에는 모노레일을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그 시한까지 오로지 공사 자재와 건축물 폐기물을 운반하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조건부 가결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06-14

14.천연기념물 측백나무 숲 보존·관리 방안 연구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측백수림 3개소를 대상으로 일반 현황 및 생육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측백수림 보존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천연기념물 측백나무 숲 보존·관리 방안 연구」 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5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용역 사업인 「천연기념물 측백나무 숲 보존·관리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보고자: 문화재청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천연기념물 측백나무 숲 보존·관리 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15.5.18.~12.13.(7개월간)

ㅇ 수행기관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 용역목적 : 천연기념물 측백나무 숲의 생육실태 등 기초자료 확보, DB화

및 이의 분석을 통한 보존관리 방안 마련

(3)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62호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1
천연기념물 제114호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171
천연기념물 제252호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 천연기념물 제1호 "달성 도동의 측백나무 숲"은 조사완료되어 대상지 제외

(4) 조사내용

- ㅇ 일반 현황 및 특성 조사
 -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그 간 연구 자료 수집, 분석
 - 대상지 자연·인문 현황 조사
- 생육실태 조사·분석
 - 대상지 내 식생, 지형, 지질, 토양 분석
 - 측백나무 숲 및 측백나무 개체의 특성, 상하부 식생 구조 조사
 - 측백나무 숲 이용 및 보존관리 현황
- ㅇ 문화재 영상 자료 데이터 구축 및 표본 제작
 - 전체 조감도 및 식생 구조 등 항공사진 및 세부사진 촬영, DB화
 - 토양 및 식물(잎, 열매, 하부 초본류 등 대상지별 30~40개) 채취, 조사 및 표본 제작
- 조사결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보존관리 방안 제시

라. 의결사항: 원안접수

1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5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현상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માં બાગ ૦	<조건부 허가>
허가		 ○ 신청인: **** ○ 허가사항 - 사업명: 대규모 청정지하저수지 개발 - 사업내용 · 취수시설 2개소(직접취수 1, 간접취수 1), 전처리시설 1개소, 관로시설 1개소, 정호시설 (주입정 2개소, 양수정 8개소), 배수시설 1개소, 운영센터 1개소(켄테이너), 부대시설 1식 · 신청면적 3558.35㎡ (영구 1,212.35㎡, 임시 2,346㎡)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일원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현 상 변 경 허가	제179호 낙동강 하류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 2018.6.30. ○ 허가조건 -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취수시설 및 전처리시설에 대하여 생활소음규제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 신청인: *** ○ 허가사항 - 사업명: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주택 및 제조업소 증축 - 사업내용 · 신청면적 지상2층, 2개동(제조업소, 단독주택) 건축높이 9.0M, 연면적 519.76㎡, 건축면적 440㎡ 수목식재 1식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번지 **호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 2018.10.30 ○ 허가조건 - 겨울철새 도래시기인 11월 ~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허가사항 - 사업명: 낙동강 생태탐방선 등 이용 선착장 조성 - 사업내용 · 콘크리트 부잔교 설치 13EA, 연락도교(1,500*11,000) 제작설치 1개소, 진입교량(3.0*15,000) 1개소, 선착장 조성면적 434㎡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삼락생태공원 내 기존 ***)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 2016.10.30 ○ 허가조건 - 현상변경 신청서에 제시한 환경영향검토서에 따른 소음, 수질오염 등 저감방안을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현 변 경 가	1 2 2 2 1 1	○ 신청인: (*)****** ○ 허가사항 - 사업명: 낙동강하구 퇴적물 연구를 위한 시추조사 - 사업내용 · 시추조사 2개소(굴착깊이 50~55m, 굴착지름 76mm)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 맥도생태 공원 내 (맥도생태공원 내 1개소, 신자도 북단 1개소)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 2015.9.30 ○ 허가조건 - 신자도 북단 시추작업은 신자도 해변이 쇠제비갈매기와 흰물떼새가 7월말까지 대규모로 번식하는 곳으로 새들의 번식기가 끝나는 7월말 이후 시행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 허가사항: 포획 및 발신기 부착후 산양 5개체 재방사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2016.05.31 ○ 허가조건 - 사업완료시 산양 포획 및 발신기 부착 후 방사 등 에 대한 세부 연구결과 별도 제출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47호 두견	 ○ 신청인: *** ○ 허가사항: 포획 및 혈액채취, 가락지 부착 후 두견 10개체 방사 ○ 허가기간: 2015.06.04~2015.06.11 ○ 허가조건 -'14년 포획장소(1:25,000 지형도의 도엽번호)와 다른 장소에서 포획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 물때새	 신청인: 국립생태원 *** 허가사항: 포획 및 가락지 부착, 혈액채취 후 검은머리물때새 20개체 방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5개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5개체)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현 변 장 경 가		- 충청남도 보령시(5개체) - 전라남도 신안군(5개체) ○ 허가기간: 2015.06.04~2016.08.31 ○ 허가조건 - 연구 완료시 가락지 부착 및 혈액채취 결과, 포획 방법 및 기술 담당자 등 모든 기록이 명시된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제323-4호 새매	○ 신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 목적: 국립공원 생물자원 보전 및 교육·홍보 ○ 수량: 원앙 1개체, 새매 1개체 박제	<허가>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 신청인: **** 민물고기연구센터장 ○ 허가사항: 어름치 80개체 포획 및 사육 ○ 허가기간: 허가일~2015.12.31 ○ 허가조건 - 방류 후 증감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획 (서식지 보완) 수립 제출, 생태계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연구소가 위치한 왕피천 등 다른 수계의 인위적 유입을 제한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치동자개	○ 신청인: **** 민물고기연구센터장 ○ 허가사항: 꼬치동자개 80개체 포획 및 사육 ○ 허가기간: 허가일~2015.12.31 ○ 허가조건 - 성어만 80개체 체집하고, 방류 후 증감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획(서식지보완) 수립 제출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03-1호 혹고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흑고니 1개체 폐사에 따른 소각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신청목적: 저어새의 인공증식 가능여부 실험 및 연구	<조건부 허가>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56호 해송 제457호 긴가지해송	○ 신청인: 국립생물자원관장 ○ 신청목적: 자생산호류의 종다양성 및 유전자 분석 연구 ○ 허가사항: 해송 2개체(해송 1개체, 긴가지해송 1개체) 채집 ○ 허가장소: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섬 일원 ○ 허가기간: 2015.08.01~2015.09.30 ○ 허가조건 - 채집개체는 최장길이 50cm미만으로 한정 채집 시관할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 채집 성공하여 표본 제작 시는 별도허가 필요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8호 산굴뚝나비	○ 신청인: ㈜생물보존연구소 *** ○ 신청목적: 산굴뚝나비의 보전·복원 연구 ○ 허가사항: 산굴뚝나비 900개체 포획, 표식 방사 ○ 허가장소: 한라산 아고산대 초지대 일원 ○ 허가기간: 2015.07.15~2015.08.15 ○ 허가조건 - 포획 시 관할 담당자의 입회하에 포획, 포획 등 모든 과정의 기록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 신청목적: 국립공원 생물자원 보전 및 교육·홍보 ○ 허가사항: 산양 1개체 표본 제작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Ž	주 요	. 내	용		时	고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	○ 신청인 ○ 허가사			른 큰고	니 1개처	· 소각	<허	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제361호 노랑부리백 로	ㅇ 허가사	적: 저어 항 백로 포 착, 부화	재 및 도 작, 할 실패 -량 및	c랑부리 ^빈 혈액 체추 알 수거	백로의 서?], 가락지	식지 보존연구					
현상		도서명	종명	혈액 체취 가락지 부착	위치추적 장치 부착	부화실패 알 수거	비고	<조:				
변경		구지도 (옹진군)	저어새	5	3			허 커 커	' }>			
허가		상여바위 (강화군)	저어새	5	3							
	칠산도 (영광군) 목도 (보령시)		저어새	5	3	2	버려진 알 또는 미부화 알					
			노랑부리 백로	5	2		(공개제한구 역 출입허가 포함)					
		목도 (보령시)	노랑부리 백로			5	버려진 알 또는 미부화 알					
		ㅇ 허가조	:건 : 번	식지의	출입횟	- 수와 인 ⁻	원 최소화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허가사				리 1개처	· 소각	<허	가>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327호 ㅇ 허가사항 : 원앙 보존 및 증식을 위한 50개체 사육					<허	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신청목적: 원앙 보존 및 증식을 위한 4개체 사육- 입수경위: 1999년 사육 허가자 ***로부터 분양	<허가>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56호 해송 제457호 긴가지해송	 ○ 신청인: 국립생물자원관장 ○ 신청목적: 자생산호류의 종다양성 및 유전자 분석 연구 ○ 허가사항: 해송 4개체 채집 (해송 2개체, 긴가지해송 2개체) ○ 신청장소: 제주시 조전읍 북촌, 한경면 일대(차귀도) ○ 허가여부: 불허 ○ 불허사유 - 부산지역에 동일종 채취를 기허가했으며 제주지역 은 광범위 연산호 보호지역으로 두 종의 분포양상이 불확실한 시점에 채취 불가 	<불허>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 신청인 : 국립생태원장 ○ 허가사항 : 폐사에 따른 매 1개체 소각	<허가>
	천연기념물 제216호 사향노루	○ 신청인: 국립생물자원관장○ 신청목적: 생물자원 확보·보관 및 유전자 분석 연구○ 허가사항: 사향노루 1개체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사)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 ○ 신청목적: 저어새 보전을 위한 이동, 분포 연구 ○ 허가사항: 저어새 5개체 포획 및 가락지 부착 후 방사 ○ 허가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 저어새 번식지(각시암 등) ○ 허가기간: 2015.06.16~2015.07.30(허가기간 중 1~2일)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현상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제243-1호 독수리 제323-1호 참매 제446호 뜸부기	○ 신청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 ○ 신청목적: 전시·교육용 6개체 박제 ○ 허가사항: 6개체 박제 (재두루미 1, 독수리 2, 참매 2, 뜸부기 1)	<허가>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90호 한강의 황쏘가리	 ○ 신청인: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장 ○ 신청목적: 황쏘가리 인공 증식 연구 ○ 허가사항: 황쏘가리 10개체 사육(암컷 5, 수컷 5) - 입수경위: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분양 ○ 허가기간: 2015.06.17~2020.06.16 ○ 허가조건: 연구목적 이외 사육 절대 불가, 치어방류는 적합크기 도달 시 한강 이외 서식지 방류불가, 치어 방류시 개체 수, 장소 등을 우리청에 사전 승인 득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 신청인: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신청목적: 남생이 보호 및 연구자료 활용 ○ 허가사항: 남생이 10개체 사육 - 입수경위: 기 사육허가자인 ***, *** 기증 ○ 허가기간: 2015.06.17~2020.06.16.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신청인: *** 신청목적: 원앙의 보존 및 증식 허가사항: 6개체 사육 (암컷4, 수컷2, 종란 50개 포함)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입수경위: 1999년 사육 허가자 ***로부터 분양 허가기간: 2015.06.19~2020.06.18 허가조건 종란 50개에서 부화된 개체는 별도 사육 허가를 득해야 함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 신청인: *** ○ 허가사항 - 사업명: 함양 상림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호(*구역) - 사업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1동 • 규모: 건축면적 118.52㎡, 연면적 206.17㎡,	<허가>
	제182호 한라산	 ○ 신청인: ************************************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신 청 인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가사항 사 업 명 : 고지대(윗세오름, 백록담 동릉 정상, 진달래밭 주변) 방송시설 설치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69호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 서귀포시 상효동 산*-*, 산*-*(문화 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고지대 방송시설 설치(3개소) ·윗세오름대피소 : 1개소(H=5.0m) ·백록담 동릉 정상 : 1개소(H=2.0m) ·진달래밭 주변 : 1개소(H=5.0m) ○ 허가기간 : 2015.6.19~2016.6.18 ○ 신청인 : 예천군 ○ 허가사항 - 사업명 : 예천 금당실 송림 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 - 사업내용 1) 조경정비(문화재구역 내) ·토공 : 흙쌓기 140㎡, 순성토운반 140㎡ ·식재공 : 맥문동 86,586본, 꽃무릇 45,322본, 수호초 3,020본 식재 ·시설공 : 등의자 12개소, 간이도서관2개소 경계휀스 86㎡ 철거 후 145㎡ 신설, 시비석 1개 2)오미봉 둘레길 등산로 정비 (*구역) · 신설 W=1.5m L=229m/ 정비 W=1.5m L=610m · 경사구간 야자매트, 평구간 마사토 포장	- 불허>	
	천연기념물 이 신청인: *** 제469호 이 허가사항 예천 금당실 - 사업명: 예천 금당실 송림 주변 근린생활시설 개축 송림 - 사업위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 - 사업내용: 기존 건물 철거 후 한식기와구조로 개축 (기존)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조 및 슬래트 건물 1층 5동 건축면적 195㎡, 높이 6.5m (개축)한식기와(검정색), 황토벽돌조, 건축면적 99.86㎡, 높 5.65m(1층), 교목 3그루, 관목 5그루 식재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상환암 법당 개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 - 사업내용 : 기존 법당 철거 및 법당 개축(67.32m²) ○ 허가기간 : 2015.5.29 ~ 2017.1.31 	<허가>
현 상 경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 신 청 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세심정 탐방로 개선시업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 - 사업내용 : 탐방로 개선 노면정비, 로프난간, 이치형목교, 슘터 등 ○ 허가조건 - 계곡 급경사 구간에 데크를 설치할 때 설치구간을 최소화할 것 - 목욕소 부근으로부터 세심정에 이르는 구간은 현재 상태 유지 ○ 허가기간 : 2015.6.1 ~ 2017.2.28 	<조건부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서귀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 - 사업내용 : 건축면적 310.77㎡, 연면적 2,530.3㎡, 최고높이 29.95m(지하 2층, 지상10층)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ㅇ 허가기간 : 2015.6.17 ~ 2017.6.30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신 청 인: *** ○ 허가사항 - 사 업 명: 정방폭포 주차장 확장사업 - 사업위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 - 사업내용: 주차장 확장(1,227㎡) ○ 허가기간: 2015.6.17 ~ 2016.12.31 	<허가>
현상 변경 허가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 신 청 인 : 담양군수 ○ 신청사항 - 사 업 명 : 소쇄원 주변정비 및 쉼터 조성 사업 - 사업위치 : 전남담양군남면지꼭리**번지외**필자(6,189㎡) - 사업내용 : 소쇄원 주변 정비, 쉼터 조성, 초정 설치 등	<불허>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 신청인: 남원시장(시설사업소) ○ 허가사항 - 사업명: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2배 설치공사 - 사업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 - 사업내용: 화장실 1개소 증축 ○ 허가조건 - 증축된 화장실 전면에 좌우 담장과 높이 형태가 동일한 차단벽 설치 - 화장실 진입로에 유도 및 차폐식재할 것(꽃댕강나무, 조릿대류, 섬쥐똥나무) - 화장실의 수직 건축선을 감추기 위한 유화식재 할 것(주목, 측백나무 등) - 증축예정지의 교목(느티나무, 느릅나무) 보호 조치 할 것 - 광한루원 입구부에 편의시설(화장실) 위치도 게시 및 지시안내판 설치 ○ 허가기간: 2015.7.1 ~ 2015.12.31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	고
허사병경	제179호 낙동강 하류	 <기 허가사항> ○ 신 청 인 : 낙동강관리본부장 ○ 허가사항 - 사업명 :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 운항구간 : 을숙 ~ 화명생태공원(14km)	<하기사	, - I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u>Q</u>	비	고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162호	ㅇ 허가사항						
	제주 도순리	- 사업 5	명 : 감귤 비가림 하으	우스 시설 설치				
	녹나무	- 사업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도 서귀포시 도순동				
	자생지		****(문화재구역 연접)					
		- 변경내용	3_			사항		
		구분	최초허가(2015.3.23)	변경허가(2015.6.19)	변경	引>		
		대지면적	6,175m²	좌동 5.400m²				
		설치면적 최고높이	5,016m² 4.7m	5,406㎡ 좌동				
		허가기간	2015.3.23~2016.3.22	좌동				
허가	리어리기기미	(م اخ ام						
사항	천연기념물	이 신 청 인						
변경	제182호	이 허가사항		의 시기() 기구				
허가	한라산		명 : 건물(문화 및 집					
	천연보호	- 사업위 <i>기</i> 	치: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vi ⇒i . 11 (례리 **-**(문화 <i>7</i>	재구역 연섭)				
		- 변경내용 						
		구분 건축면적/	최초허가(2015.2.27)	변경허가(2015.6.19)		사항		
		신독인석/ 연면적	148.22m²/148.22m²	148.65 m²/148.65 m²	변경	터가>		
		최고높이	5.8m(1층)	6.2m(1층)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u></u>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구조	경사지붕	경사지붕+평지붕				
		허가기간	2015.2.27~2016.2.28	좌동				
		ام احاد	· 리크노시크코키 .	. al Al H H				
	명승 제20호		›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제천	ㅇ 신청사항) 신청사항					
	의림지와	- 사업 5	명 : 의림지 수리시설	개보수	<불	허>		
	제림	- 사업위치	시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번지				
		- 사업내용	3.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刊	고
		① 시석붙임(L=280m, A=1,680m²), 지연석썋(L=47m, A=141.0m²)		
		② 덧쌓기 구간 보축 (L=50.0m, H=0.30m)		
		③ 제당그라우팅 (1구간, L=44m, 2구간 L=80m, 총127공)		
		④ 여수토 옹벽보강 (L=16.0m, A=80 m²)		
		⑤ 방수로사면보강 (토사부 A=818.00m²), 지연석쌓기 A=186.0m²		
		⑥ 취수시설 : 스핀들 및 수문교체 (1식)		
		⑦ 가도설치 : 공사작업용 가도설치 L=327.0m, B=5.0m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